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07.1.1부터 원가 및 성과관리가 가능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선 한시기구·정원의 승인, 및 '08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한시정원 승인 등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자 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관련 업무를 명시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군 본청에 증원 보강됨으로 읍면업무의 일부를 군으로 이관하고 신규업무를 명시하여 사회복지 종합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 성주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및 마을하수도 설치에 따른 신규인력이 증원 보강됨으로 관련 업무를 명시하여 하수처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 농림부 지역특화 공모사업의 하나인 참외생태학습원이 '06년부터 개원되면 홍보시설 및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방문객에 대한 밀착홍보 등에 따른 신규인력이 증원됨으로 관련 업무를 명시하여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 21C 지방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기능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고객만족을 위한 기구·정원의 승인됨으로 이에 따른 관련 업무를 명시하여 지방행정혁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및 회계정보시스템 운영

○ 사회복지업무 기능조정

 • 읍면수행 업무 중 본청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의 본청 이관

○ 지역복지정책관련 업무 수행

 •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서비스실시 총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 지역특수사업개발 계획수립 시행
- 의료급여 연장승인 관련 사후관리 및 차상위 계층 관리
- 경로사업실시 및 중풍, 치매노인 관리대책 수립
- 고령화종합대책수립 및 노인요양제도 관련업무
- 여성정책 기본계획수립 및 평가·조사
- 모·부자가정 책정, 보호, 지원관리 및 자립지원

○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
○ 마을하수도사업 설치·관리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 수처리 개선업무 전반
○ 참외생태학습원 운영·관리
○ 인근유적지 및 유통센터와 연계한 테마관광코스 개발
○ 자체 업무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추진 총괄
○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혁신운영협의회 운영 지원
○ 고객관리 대상 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3. 일부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참고사항

○ 기구정원조정 계획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제3목 내지 제22목을 각각 제4목 내지 제23목으로 하고, 동호에 제3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별 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동조동항제4호중 제22목 내지 제26목을 각각 제23목 내지 제27목으로 하고, 동호에 제22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및 회계정보시스템 운영

동조동항제6호중 제1목 내지 2목을 각각 제4목 내지 제5목으로 하고, 동호에 제1목 내지 제3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서비스 총괄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3) 지역특수사업개발 계획수립 시행

동조동항동호중 "제3목 행여자 및 사망자 관리"를 "제6목 부랑인, 노숙자, 행려자 및 사망자관리"로 한다.

동조동항동호중 제4목 내지 6목을 제7목 내지 9목으로 한다.

동조동항동호중 "제7목 의료급여업무처리"를 "제10목 의료급여 연장승인 관련 사후관리 및 차상위 계층 관리"로 한다.

동조동항동호중 제8목 내지 제11목을 제11목 내지 제14목으로 한다.

동조동항동호중 제12목 내지 제13목을 제15목 내지 제16목으로 한 다음 삭제한다.

동조동항동호중 제14목 내지 제18목을 제19목 내지 제23목으로 하고, 동호에 제17목 내지 제18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경로사업실시 및 중풍, 치매노인 관리대책 수립
18) 고령화종합대책수립 및 노인요양제도 관련업무

동조동항동호중 제19목 내지 34목을 제29목 내지 제40목으로 하고, 동호에 제24목 내지 제28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아동복지증진 및 아동복지 법인시설의 지도감독
25) 아동후생시설의 운영지도 감독
26) 여성정책 기본계획수립 및 평가·조사
27) 모·부자가정 책정, 보호, 지원관리 및 자립지원
28)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 대상자 실태조사

동조동항제7호중 제25목을 제29목으로 하고, 동호에 제25목 내지 제28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
26) 마을하수도사업 설치·관리
27)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28) 수처리 개선업무 전반

동조동항제8호중 제36목 내지 제38목을 제38목 내지 제40목으로 하고, 동호에 제36목 내지 제37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참외생태학습원 운영·관리
37) 인근유적지 및 유통센터와 연계한 테마관광코스 개발

동조동항제13호중 제17목 내지 제21목을 제20목 내지 제24목으로 하고, 동호에 제17목 내지 제19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자체 업무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추진 총괄
18)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혁신운영협의회 운영 지원
19) 고객관리 대상 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1. 기획감사실 1)~2) (생 략) 〈신설〉 3)~22) 생략	1. 기획감사실 1)~2) (현행과 같음) 3).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 4)~23)(종전3~22목과 같음)	○ '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시행에 따른 업무 신설
4. 재무과 1)~21) (생략) 〈신설〉 22)~26) (생략)	4. 재무과 1)~21) (현행과 같음) 22) 복식부기 회계업무처리 및 회계정보시스템 운영 23)~27)(종전22~26목과 같음)	○ '07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 신설
6. 사회복지과 〈신설〉 1)~2)(생략) 3) 행여자 및 사망자 관리 4)~6)(생략) 7) 의료급여업무처리	6.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3) 지역특수사업개발 계획 수립 시행 4)~5)(종전1~3목과 같음) 6) 부랑인, 노숙자, 행려자 및 사망자 관리 7)~9)(종전4~6목과 같음) 10) 의료급여 연장승인 관련 사후 관리 및 차상위 계층	○ 읍면수행업무 중 본청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 신규업무를 명시하여 사회복지 종합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8)~11)(생략)	11)~14)(종전8~11목과 같음)	
12) 아동복지증진 및 아동복지 법인시설의 지도감독	15) 삭제(종전12목과 같음)	○ 과내 업무조정 · 24목으로 이동
13) 아동후생시설의 운영지도 감독	16) 삭제(종전13목과 같음)	○ 과내 업무조정 · 25목으로 이동
〈신설〉	17) 경로사업실시 및 중풍, 치매노인 관리대책 수립 18) 고령화종합대책수립 및 노인요양제도 관련업무	
14)~18)(생략)	19)~23)(종전14~18목과 같음)	
〈신설〉	24) 아동복지증진 및 아동복지 법인시설의 지도 감독 25) 아동후생시설의 운영지도 감독 26) 여성정책 기본계획수립 및 평가·조사 27) 모·부자가정 책정, 보호, 지원관리 및 자립지원 28)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 대상자 실태조사	
19)~34)(생략)	29)~44)(종전19~34목과 같음)	
7. 환경보호과	7. 환경보호과	
1)~24)(생략)	1)~2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신설〉	25) 민간위탁업체 지도감독 26) 마을하수도사업 설치·관리 27)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28) 수처리개선업무 전반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업무신설
25) (생략)	29) (종전 25목과 같음)	
8. 산업과 1)~35) (생략)	8. 산업과 1)~35) (현행과 같음)	
〈신설〉	36)참외생태학습원 운영·관리 37)인근유적지 및 유통센터와 연계한 테마관광코스 개발	○ 참외생태학습원 설치에 따른 업무신설
36)~38) (생략)	38)~40)(종전36~38목과같음)	
13. 자치혁신과 1)~16) (생략)	13. 자치혁신과 1)~16) (현행과 같음)	
〈신설〉	17) 자체 업무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추진 총괄 18)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혁신 운영협의회 운영지원 19) 고객관리 대상 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 행정혁신 가속화를 위한 업무신설
17)~21) (생략)	20)~24)(종전17~21목과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